감액제도 개선 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

- '19. 12. 5. 소관부서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(8252) -

□ 행정예고 기간 : 2019.11.13. ~ 12.2.(20일)

□ 행정예고(우본 공고 제2019-135호)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

구 분	의 견 내 용	검 토 내 용
**신문사 등 47개사	o 정기간행물 감액제도 축소조정 내용 중 주간신문의 우편요금 감액률을 변경 전 감액률로 유지	o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 출범 시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여 우편수지 개선에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현재까지 유지 o 그러나, 8년 연속 우편적자가 발생하는 등 우편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, 정기간행물의 원가보상률은 통상우편 평균 원가보상율(87%)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, 특히 일·주간신문은 42~45%에 불과하여 접수와 동시에 손실이 발생 - 따라서 집배원 인건비 보전 등 보편적서비스 유지 및 우편수지 개선을 위해 원가보상률이 낮고 감액률이 높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감액률 축소 조정이 불가피 o 또한, 금번 감액률 축소 시 일·주간신문의 원가보상률을 고려하였고, 일간신문의 예외기준 폐지 등으로 차등해소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계획임 ※ 금년 6.1일부터 생활정보홍보우편의 감액률을 최대 19%p 축소하였고,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도 '20.1.1일부터 현재의 감액률보다 17%p 축소 시행 예정임
**타임즈 등 22개사	o 정기간행물 감액률의 주간지와 일간지 차등 해소 필요 o 정기간행물 감액률 축소와 구분 감액률 축소 반대 o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	
**신문사	o 일간지의 기본감액 4%p 이내로 축소 요망 o 적용시기를 2020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 요망	
한국** 등 기타 18개사	o 우편에 의존하는 농어업전문지의 축소로 농업인의 알권리 침해, 지역신문 부담 가중 우려 o 업체의 예산확보 불가능, 정부예산으로 우편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	